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72호 2016.10. 7(금)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312호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313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1314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315호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8
- 사천시 조례 제1316호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31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사천시 조례 제1318호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319호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23호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 2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3)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단은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
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
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5)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7)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내역을 확인 후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9)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평가 결과” 를 “평가결과 중 우수한 사업체”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본청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영 제106조 제2항”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2조제3항 중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를 “간사는 계약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로 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 중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2)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제4항을 신설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중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척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외의 “조례로”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3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44조 각 호외와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4)

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시설 중 다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의 공장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참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6)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 일 것이다.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5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

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0퍼센트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7)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

제48조제1항 중 “제84조제6항” 을 “제84조제7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4조제7항” 을 “제84조제8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 실제조사 및 평가 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19)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3. 상·하수도 요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1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천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2)

조 례

사천시 훈령 제323호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
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안전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구축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구축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안전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구축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4)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안전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안전센터”(이하 “통합안전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통합안전센터의 장”이란 통합안전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 통합안전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5)

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운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 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3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6)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안전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안전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안전센터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10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사천경찰서장은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안전센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안전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7)

제3장 통합안전센터의 운영

제11조(통합안전센터의 역할) ① 통합안전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안전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안전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안전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안전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안전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안전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8)

- 7. 통합안전센터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에 따라 통합안전센터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제의 범위) 통합안전센터의 장은 통합안전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수입) 시장은 사천경찰서, 사천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안전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29)

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관제요원의 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제요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30)

제19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안전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① 시장은 통합안전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에 관한 사항
3. CCTV 설치 계획 및 구축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3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소속 국장과 정보통신과장, 도로과장, 사천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 부서장, 사천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통합안전센터 전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주민대표 등
2.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⑥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32)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23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통합안전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안전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통합안전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업무) 전체를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축·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의무) ① 시장은 통합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하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72호(33)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